

# 2014년도 제1회 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 I. 추경예산개요

### 1. 세 입

- 2014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3조 1,909억 2천6백만원 대비 0.9% 증가된 13조 3,078억 2천 6백만원임.

#### 〈2014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4년 예산   | 2014년도<br>추경예산(안) | 당초예산 대비  |       |
|---------|------------|-------------------|----------|-------|
|         |            |                   | 증 감      | 증감률   |
| 계       | 13,190,926 | 13,307,826        | 116,900  | 0.9   |
| 지방세수입   | 12,407,276 | 12,735,620        | 328,344  | 2.6   |
| 보통세     | 10,932,046 | 11,260,390        | 328,344  | 3.0   |
| 목적세     | 1,296,749  | 1,296,749         | 0        | 0.0   |
| 지난년도수입  | 178,481    | 178,481           | 0        | 0.0   |
| 세외수입    | 783,650    | 572,206           | -211,444 | -27.0 |
| 경상적세외수입 | 27,737     | 27,737            | 0        | 0.0   |
| 임시적세외수입 | 755,913    | 544,469           | -211,444 | -28.0 |

# 시 세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4년 예산   | 2014년<br>추경예산안    | 당초예산 대비  |        |
|-------------|------------|-------------------|----------|--------|
|             |            |                   | 증감       | 증감률(%) |
| 합 계         | 12,407,276 | <b>12,735,620</b> | 328,344  | 2.6    |
| 보 통 세       | 10,932,046 | <b>11,260,390</b> | 328,344  | 3.0    |
| 취 득 세       | 2,474,204  | <b>2,809,204</b>  | 335,000  | 13.5   |
| 주 민 세       | 66,200     | <b>396,029</b>    | 329,829  | 498.2  |
| 재 산 세       | 1,814,185  | <b>1,814,185</b>  | 0        | 0.0    |
| 자 동 차 세     | 1,112,072  | <b>1,062,072</b>  | -50,000  | -4.5   |
| 레 저 세       | 174,795    | <b>174,795</b>    | 0        | 0.0    |
| 담 배 소 비 세   | 546,333    | <b>546,333</b>    | 0        | 0.0    |
| 지 방 소 비 세   | 782,250    | <b>975,594</b>    | 193,344  | 24.7   |
| 지 방 소 득 세   | 3,962,007  | <b>3,482,178</b>  | -479,829 | -12.1  |
| 목 적 세       | 1,296,749  | <b>1,296,749</b>  | 0        | 0.0    |
| 지역자원시설세     | 185,046    | <b>185,046</b>    | 0        | 0.0    |
| 지 방 교 육 세   | 1,111,703  | <b>1,111,703</b>  | 0        | 0.0    |
| 지 난 년 도 수 입 | 178,481    | <b>178,481</b>    | 0        | 0.0    |

## 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 예 산 과 목                            | 2014년 예산 | 2014년<br>추경예산안 | 당초예산 대비  |        |
|------------------------------------|----------|----------------|----------|--------|
|                                    |          |                | 증감       | 증감률(%) |
| 세 외 수 입 ( 계 )                      | 783,650  | 572,206        | -211,444 | -27.0  |
| 경 상 적 세 외 수 입                      | 27,737   | 27,737         | 0        | 0.0    |
| 공 유 재 산 임 대 료                      | 6,105    | 6,105          | 0        | 0.0    |
| 기 타 사 용 료                          | 1,038    | 1,038          | 0        | 0.0    |
| 증 지 수 입                            | 565      | 565            | 0        | 0.0    |
| 공 공 예 금 이 자 수 입                    | 19,264   | 19,264         | 0        | 0.0    |
| 기 타 이 자 수 입                        | 765      | 765            | 0        | 0.0    |
| 임 시 적 세 외 수 입                      | 755,913  | 544,469        | -211,444 | -28.0  |
| 국 유 재 산 매 각 수 입                    | 0        | 0              | 0        | 0.0    |
| 시 유 재 산 매 각 수 입                    | 411,376  | 411,376        | 0        | 0.0    |
| 순 세 계 잉 여 금                        | 0        | 0              | 0        | -      |
| 기 타 수 입                            | 342,506  | 131,062        | -211,444 | -61.7  |
| 변 상 금                              | 1,117    | 1,117          | 0        | 0.0    |
| 위 약 금                              | 164      | 164            | 0        | 0.0    |
| 체 납 처 분 수 입                        | 1        | 1              | 0        | 0.0    |
| 시 도 비 반 환 수 입                      | 1,764    | 1,764          | 0        | 0.0    |
| 그 외 수 입                            | 339,460  | 128,016        | -211,444 | -62.3  |
| 시 설 관 리 공 단 대 행 사<br>업 비 정 산 반 납 등 | 4,544    | 4,544          | 0        | 0.0    |
| 시 금 고 출 연 금                        | 40,000   | 40,000         | 0        | 0.0    |
| 13년 취득세 감면<br>미 보 전 분              | 0        | 81,900         | 81,900   | 0.0    |
| 법안카드 캐시백 적립금                       | 454      | 454            | 0        | 0.0    |
| 부가가치세 매입 세<br>액 공 제 액              | 1,118    | 1,118          | 0        | 0.0    |
| 취득세감면보전금                           | 293,344  | 0              | -293,344 | -100.0 |
| 지방교육세보전금                           | 0        | 0              | 0        | -      |
| 지 난 년 도 수 입                        | 2,031    | 2,031          | 0        | -      |

## 2. 세 출

- 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2조 2,537억 3천 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2조 2,674억 8천 1백만원 대비 0.6% 감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4년도    |           |           | 증감률     |       |
|-------|-----------|-----------|-----------|---------|-------|
|       | 기정예산      | 추경예산      | 증감        |         |       |
| 총 계   | 2,267,481 | 2,253,731 | △13,750   | △0.6    |       |
| 행정기관리 | 소 계       | 2,267,481 | 2,253,731 | △13,750 | △3.8  |
|       | 행정운영경비    | 929,941   | 929,941   | 0       | 0     |
|       | 재무활동      | 0         | 0         | 0       | 0     |
|       | 사업비       | 1,337,539 | 1,323,789 | △13,750 | △27.6 |
| 교 부 금 | 0         | 0         | 0         | △2.2    |       |

###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 세부사업별                     | 2014 예산   |           |         | 증감률   |
|---------------------------|-----------|-----------|---------|-------|
|                           | 기정예산      | 추경예산      | 증감      |       |
| 합 계                       | 2,267,481 | 2,253,731 | △13,750 | △0.6  |
|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 1,022     | 1,603     | 581     | 56.8  |
| 공공공사 사전계약심사제 운영           | 108       | 60        | △48     | △43.5 |
| 재정보전금                     | 955,632   | 941,697   | △13,935 | △1.5  |
|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br>납세조합 보조 | 334       | 498       | 164     | 49.1  |
|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2,359     | 1,847     | △512    | △21.7 |

## II .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201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은 교육청 전출금 정산 및 기초연금제 도입, 무상보육 등 정부복지확대에 따른 복지비 추가 소요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을 함께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총 예산(안)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857억원(1.6%)이 증가한 24조 8,633억원으로 제출하였음.

### 1. 세입예산

- 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취득세 영구인하 등 정부정책효과에 따른 취득세 증가예상분 3,350억원과 2013년도 취득세 감면 미보전액 보전에 따른 그외수입 819억원 등 4,169억원은 증액하고, 전년도 법인수익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 △1,500억원, 세월호 사건 영향에 의한 소비감소추세에 따른 지방소비세 △1,000억원 및 유가보조금 안분비율 하락에 따른 자동차세 △500억원 등 3,000억원은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1,169억원(0.6%)이 증가한 13조 3,078억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 추가경정예산 주요 세목별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세 목     | 구 분       | 예 산 액      |            |          | 비 고                                    |
|---------|-----------|------------|------------|----------|--|
|         |           | 기정예산       | 추 경 예 산    | 증 감      |  |
| 계       |           | 13,190,926 | 13,307,826 | 116,900  |  |
| 시 세     |           | 12,407,276 | 12,735,620 | 328,344  |  |
|         | 취 득 세     | 2,474,204  | 2,809,204  | 335,000  | 취득세 영구인하 등 정부 정책효과에 따른 거래증가            |
|         | 지 방 소 득 세 | 3,962,007  | 3,482,178  | -479,829 | 2014.1.1. 지방세법 개정 및 전년도 법인수익 감소        |
|         | 지 방 소 비 세 | 782,250    | 975,594    | 193,344  | 지방소비세 6% 인상(당초3%) 및 세월호 사건 영향으로 소비감소   |
|         | 주 민 세     | 66,200     | 396,029    | 329,829  | 2014.1.1.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주민세로 변경 |
|         | 자 동 차 세   | 1,112,072  | 1,062,072  | -50,000  | 주행분 유가보조금 안분비율 하락 (14.97%→10.59%)      |
|         | 기 타 세 목   | 4,010,543  | 4,010,543  | 0        |  |
| 세 외 수 입 |           | 783,650    | 572,206    | -211,444 |  |
|         | 그 외 수 입   | 293,344    | 81,900     | -211,444 | 취득세 영구인하 보전 지방소비세 3% 2013년 취득세 감면 미보전액 |
|         | 기 타 수 입   | 490,306    | 490,306    | 0        |  |

## 가. 취득세

- 전세가격 상승, 저금리 영향, 리모델링 등에 따라 매매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부정책(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취득세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에 의한 부동산 거래 증가 추세로 당초예산 편성 대비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3,350억원을 증액 조정하려는 것임.
- 취득세 중 부동산분 취득세는 주택시장 거래가 회복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책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거래시장 정상화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거래 활성화가 기대되어 당초예산 대비 약 3,666억 2천 1백만원(18.3%)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 차량분 취득세의 경우도 매년 증가추세와 신규차량 판매 증가 등으로 다소 증가(216억7천9백만원)가 예상되나 리스차량관련 소송 일부 패소<sup>1)</sup>에 따른 환급(△533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약 △316억 2천 1백만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 취득세 전체적으로는 당초 예산액(2조 4,742억4백만원) 대비 약 3,350억원(13.5%)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바, 당초 예산편성 규모 보다 약 13.5%수준까지 세입이 초과 한다는 것은 당초 예산 편성시 과도하게 소극적인 예산편성결과에 따른 것이라 하겠으며, 세입예산의 과소 계상은 세출예산에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못함에 따른 예산사장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추계와 함께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1) 2012년 타 시·도 허위사업장에 등록된 리스차량에 부과·징수한 취득세 193,046백만원에 대해 리스업체에서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조세심판 결과 부과취소 결정('14.6월)된 50,302백만원과 환부이자 2,944백만원을 포함해 총 53,246백만원 환급 처리('14.7월).

## 취득세 추경(안)

(단위 : 백만원)

| 구분   | 예산액       |           |         | 비고  |
|------|-----------|-----------|---------|---|
|      | 기정예산      | 추경예산      | 증감      |   |
| 취득세계 | 2,474,204 | 2,809,204 | 335,000 |   |
| 부동산  | 2,000,629 | 2,367,250 | 366,621 | · 주택시장 거래 회복 기대와 정책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거래시장 정상화 기반 조성에 따른 거래활성화 기대        |
| 차량   | 473,575   | 441,954   | △31,621 | · 신규차량 판매 증가 등에 따른 증가추세(217억원)<br>· 리스차량관련 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환급(△533억원) |

## 2014 취득세 징수전망

■ 예산 : 2조 4,742억원      전망 : 2조 8,092억원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4 예산(A) | 2014전망    |           | 2013 결산(C) | '14년 예산대비 |         | '13년 결산대비 |         |
|------|------------|-----------|-----------|------------|-----------|---------|-----------|---------|
|      |            | 6월말실적     | 전망액(B)    |            | 금액(B-A)   | 비율(B/A) | 금액(B-C)   | 비율(B/C) |
| 취득세계 | 2,474,204  | 1,576,518 | 2,809,204 | 2,481,094  | 335,000   | 113.5   | 328,110   | 113.2   |
| 부동산  | 2,000,629  | 1,324,285 | 2,367,250 | 2,013,467  | 366,621   | 118.3   | 353,783   | 117.6   |
| 차량   | 473,575    | 252,233   | 441,954   | 467,627    | -31,621   | 93.3    | -25,673   | 94.5    |

## 연도별 취득세 예산 및 결산현황

■ 부동산 취득세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전망   |
|-----|-----------|-----------|-----------|-----------|-----------|-----------|
| 예산  | 2,702,382 | 2,425,610 | 2,900,606 | 2,257,606 | 2,139,875 | 2,000,629 |
| 결산  | 2,232,564 | 2,323,894 | 2,586,312 | 2,216,910 | 2,013,467 | 2,367,250 |
| 결산율 | 82.6      | 95.8      | 89.2      | 98.2      | 94.1      | 118.3     |

■ 차량 취득세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전망 |
|-----|---------|---------|---------|---------|---------|---------|
| 예산  | 478,589 | 442,589 | 486,209 | 493,183 | 442,077 | 473,575 |
| 결산  | 431,893 | 488,674 | 470,161 | 625,913 | 467,627 | 441,954 |
| 결산율 | 90.2    | 110.4   | 96.7    | 126.9   | 105.8   | 93.3    |

## 나. 지방소득세

- 국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는 전년도 경기침체로 인한 법인수익 감소에 따른 법인세분 감소(△1,451억원)와 함께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세목변경(지방소득세 → 주민세, △3,298억원) 등에 따라 당초 예산편성액 대비 △4,798억 2천 9백만원(당초 예산대비 12.1%)을 감액조정하고 있으나, 법령 개정에 따른 단순 예산과목 변경분을 제외할 경우 지방소득세는 당초 예산 대비 △1,500억원이 감소(△4.1%)한 3조 4,821억 7천 8백만원이 징수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 지방소득세 추경(안)

○ 예산 : 3조 9,620억 원,      전망 : 3조 4,822억 원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예 산 액<br>(A) | 실적 및 전망   |           |              | 예산대비 증감현황    |                  |
|-------|--------------|-----------|-----------|--------------|--------------|------------------|
|       |              | 7월말 실적    | 전망액(B)    | 전망율<br>(B/A) | 증감액<br>(B-A) | 증감율<br>((B-A)/A) |
| 계     | 3,962,007    | 2,388,254 | 3,482,178 | 87.9         | -479,829     | -12.1            |
| 소득세분  | 758,357      | 582,419   | 744,463   | 98.2         | -13,894      | -1.8             |
| 법인세분  | 1,340,965    | 979,423   | 1,195,902 | 89.2         | -145,063     | -10.8            |
| 특별징수분 | 1,532,856    | 826,412   | 1,541,813 | 100.6        | 8,957        | 0.6              |
| 종업원분  | 329,829      |           |           | 0.0          | -329,829     | -100.0           |

### 연도별 지방소득세 예산 및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전망    |
|-----|-----------|-----------|-----------|-----------|-----------|-----------|
| 예 산 | 3,543,489 | 3,215,002 | 3,426,242 | 3,882,031 | 3,668,306 | 3,632,178 |
| 결 산 | 2,952,672 | 3,027,489 | 3,444,581 | 3,819,078 | 3,718,399 | 3,482,178 |
| 결산율 | 83.3      | 94.2      | 100.5     | 98.4      | 101.4     | 95.9      |



## 다. 지방소비세

- 지방소비세의 세수규모는 경기성장에 따라 전년도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세월호 참사 영향에 의해 부가가치세 감소(△1,000억원)가 예상되고, ‘그외수입’에 포함되어 있던 ‘취득세영구인하에 따른 취득세 감면보전금’ 2,933억 4천 4백만원이 지방소비세 과목으로 조정됨에 따라 지방소비세 전체적으로는 당초 예산 편성(7,822억5천만원) 대비 24.7%가 증가(1,933억 4천 4백만원)한 9,755억 9천 4백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세입예산과목 조정분(그외수입과 ↔ 지방소득세)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 지방소비세는 당초 예산편성(지방소비세+그외수입) 대비 9.3%인 1,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지방소비세 추경(안)

○ 예산 : 7,823억 원,      전망 : 9,756억 원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예 산 액<br>(A) | 실적 및 전망 |           |              | 예산대비 증감현황    |                  |
|----------------|--------------|---------|-----------|--------------|--------------|------------------|
|                |              | 6월말 실적  | 전망액(B)    | 전망율<br>(B/A) | 증감액<br>(B-A) | 증감율<br>((B-A)/A) |
| 계              | 1,075,594    | 606,555 | 1,268,938 | 118.0        | 193,344      | 18.0             |
| 지방소비세          | 1,075,594    | 488,726 | 975,594   | 90.7         | -100,000     | -9.3             |
| 취득세감면<br>보 전 분 | 0            | 117,829 | 293,344   | -            | 293,344      | -                |

※ 취득세감면 보전분(2,933억원)은 당초 세입예산 편성시 제외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음.

### 연도별 지방소비세 예산 및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전망    |
|-----|---------|---------|---------|---------|-----------|
| 예 산 | 389,350 | 422,486 | 469,260 | 480,918 | 1,075,594 |
| 결 산 | 427,677 | 464,867 | 469,755 | 480,403 | 975,594   |
| 결산율 | 109.8   | 110.0   | 100.1   | 99.9    | 90.7      |

※ 2014 전망액 - 예산액에는 당초 ‘그외수입’ 편성분을 포함한 것임.

## 라. 자동차세

- 자동차세는 소유분의 경우는 자동차등록대수 증가 등으로 목표액과 비슷한 수준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나, 주행분의 경우는 유가보조금 안분비율의 하향조정(14.97% → 10.59%)에 따라 세입이 대폭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당초 예산 편성 대비 4.5%인 △500억원을 감액하여 1조 620억 7천 2백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자동차세 추경(안)

- 예산 : 1조 1,121억 원,      전망 : 1조 621억 원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예 산 액<br>(A) | 실적 및 전망 |           |              | 예산대비 증감현황    |                  |
|-------|--------------|---------|-----------|--------------|--------------|------------------|
|       |              | 6월말 실적  | 전망액(B)    | 전망율<br>(B/A) | 증감액<br>(B-A) | 증감율<br>((B-A)/A) |
| 계     | 1,112,072    | 570,309 | 1,062,072 | 95.5         | -50,000      | -4.5             |
| 소 유 분 | 584,803      | 349,142 | 584,803   | 100.0        | 0            | 0.0              |
| 주 행 분 | 527,269      | 221,167 | 477,269   | 90.5         | -50,000      | -9.5             |

### 연도별 자동차세 예산 및 결산현황

- 소유분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전망         |
|-----|---------|---------|---------|---------|----------------|
| 예 산 | 581,349 | 608,286 | 591,854 | 585,987 | 584,803        |
| 결 산 | 586,199 | 590,755 | 566,720 | 564,255 | <b>584,803</b> |
| 결산율 | 100.8   | 97.1    | 95.8    | 96.3    | 100.0          |

- 주행분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전망         |
|-----|---------|---------|---------|---------|----------------|
| 예 산 | 443,381 | 500,600 | 505,161 | 484,671 | 527,269        |
| 결 산 | 345,884 | 419,744 | 490,127 | 527,938 | <b>477,269</b> |
| 결산율 | 78.0    | 83.8    | 97.0    | 108.9   | 90.5           |

## 마. 주민세

- 주민세는 지방세법 개정(2014.1.1.)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소득분과 종업원분으로 구분되어 소득분은 지방소득세로 존치되고, 종업원분은 주민세로 변경됨에 따라 세입예산과목의 분류만 재조정하는 사안으로 당초 예산편성 규모와 같은 3,960억 2천 9백만원임.

### 연도별 주민세 예산 및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전망  |
|-----|---------|---------|---------|---------|---------|
| 예 산 | 241,202 | 269,372 | 303,054 | 334,709 | 329,829 |
| 결 산 | 254,481 | 277,715 | 301,773 | 313,575 | 329,829 |
| 결산율 | 105.5   | 103.1   | 99.6    | 93.7    | 100.0   |

## 바. 그외수입

- 그외수입은 당초 '취득세감면보전금(2,933억원)', '시금고출연금(400억원)',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11억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정산반납등(4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취득세감면보전금 2,933억 4천 4백만원은 '지방소비세'로 과목변경 조정하고 추가적인 세입이 예상되는 '2013년도 취득세 감면 미보전분' 819억원을 추가적으로 계상함에 따라, 표면적으로는 당초 예산 편성 대비 62.3%인 △2,114억 4천 4백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예산과목 조정분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당초 예산(461억1천6백만원) 대비 177.6%인 819억원을 증액 조정한 1,280억 1천 6백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사. 종합검토

- 금번 재무국 소관의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에 따른 경기상황 변동 및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관련 세입 예산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나, 조정되는 세목은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및 ‘자동차세’와 ‘그외수입’ 등 6개 세목에만 국한하고 있음.
- 그러나, 금번 추경에서는 취득세(등록분) 등의 본세에 부가하여 부과 징수 되는 세목인 지방교육세 등의 조정과 함께 그 외의 타 세목에 대해서도 그 징수실적이나 징수전망에 대한 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세입분석과 이에 따른 적정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조정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지방교육세 재원 = 취득세(등록분) 20%, 재산세의 20%, 담배소비세의 50%, 레저세의 40%, 균등분 주민세의 25%, 승용자동차세의 30%, 등록분면허세(부동산)의 20%

☞ 지방교육세 증액 검토규모 => 367억원

= 취득세 등록분(=부동산분 취득세 조정분×50%)×교육세안분비율

= 1,833억원(=3,667억원×50%)×20%

## 2014 추경예산관련 재무국 징수실적

(단위:백만원, %)

| 구<br>분<br>세<br>목 | 예 산 액          |                |              | 수 납액<br>(7월말 현재)<br>(C) | 수 납률<br>(C/A) | 비 고  |
|------------------|----------------|----------------|--------------|-------------------------|---------------|------|
|                  | 기 정 예 산<br>(A) | 추 경 예 산<br>(B) | 증 감<br>(B-A) |                         |               |      |
| 계                | 13,190,926     | 13,307,826     | 116,900      | 7,620,085               | 57.8%         |      |
| 시                | 12,407,276     | 12,735,620     | 328,344      | 7,542,222               | 60.8%         |      |
| 취 득 세            | 2,474,204      | 2,809,204      | 335,000      | 1,781,040               | 72.0%         | 추경조정 |
| 지 방 소 득 세        | 3,962,007      | 3,482,178      | -479,829     | 2,585,989               | 65.3%         | 추경조정 |
| 지 방 소 비 세        | 782,250        | 975,594        | 193,344      | 501,800                 | 64.1%         | 추경조정 |
| 주 민 세            | 66,200         | 396,029        | 329,829      | 213,492                 | 322.5%        | 추경조정 |
| 자 동 차 세          | 1,112,072      | 1,062,072      | -50,000      | 632,459                 | 56.9%         | 추경조정 |
| 재 산 세            | 1,814,185      | 1,814,185      | 0            | 582,562                 | 32.1%         |      |
| 레 저 세            | 174,795        | 174,795        | 0            | 81,073                  | 46.4%         |      |
| 담 배 소 비 세        | 546,333        | 546,333        | 0            | 286,429                 | 52.4%         |      |
| 지역자원시설세          | 185,046        | 185,046        | 0            | 198,744                 | 107.4%        |      |
| 지 방 교 육 세        | 1,111,703      | 1,111,703      | 0            | 556,718                 | 50.1%         | 검토요망 |
| 지 난 년 도 수 입      | 178,481        | 178,481        | 0            | 121,916                 | 68.3%         |      |
| 세 외 수 입          | 783,650        | 572,206        | -211,444     | 77,863                  | 9.9%          |      |
| 경 상 적 세 외 수 입    | 27,737         | 27,737         | 0            | 12,566                  | 45.3%         |      |
| <b>공유재산임대료</b>   | <b>6,104</b>   | <b>6,104</b>   | <b>0</b>     | <b>528</b>              | <b>8.7%</b>   | 검토요망 |
| 기 타 사 용 료        | 1,038          | 1,038          | 0            | 930                     | 89.6%         |      |
| 증 지 수 입          | 565            | 565            | 0            | 338                     | 59.8%         |      |
| 공공예금이자수입         | 19,264         | 19,264         | 0            | 10,166                  | 52.8%         |      |
| 기타이자수입           | 766            | 766            | 0            | 604                     | 78.9%         |      |
| 임 시 적 세 외 수 입    | 755,913        | 544,469        | -211,444     | 65,297                  | 8.6%          |      |
| <b>사유재산매각수입</b>  | <b>411,376</b> | <b>411,376</b> | <b>0</b>     | <b>12,580</b>           | <b>3.1%</b>   | 검토요망 |
| 기 타 수 입          | 342,506        | 131,062        | -211,444     | 50,139                  | 14.6%         |      |
| 변 상 금            | 1,281          | 1,281          | 0            | 221                     | 17.3%         |      |
| 위 약 금            | 0              | 0              | 0            | 130                     | -             |      |
| 체납처분수입           | 1              | 1              | 0            | 1                       | 100.0%        |      |
| 시도비반환금           | 1,764          | 1,764          | 0            | 0                       | 0.0%          |      |
| 그 외 수 입          | 339,460        | 128,016        | -211,444     | 49,787                  | 14.7%         | 추경조정 |
| 지 난 년 도 수 입      | 2,031          | 2,031          | 0            | 2,578                   | 126.9%        |      |

### 3. 세출예산

○ 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5억8천1백만원)”,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보조(1억6천4백만원)”, 등 2개 사업에 7억 4천 5백만원은 증액하고, “공공공사 사전계약심사제 운영(△4천8백만원)”, “재정보전금(△139억3천5백만원)”,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5억1천2백만원)” 등 3개 사업에 144억 9천 5백만원은 감액하여, 총 5개사업에 137억 5천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임.

#### 〈 사업별 증감 현황 〉

(단위 : 천원)

| 세 부 사 업   |                                | 기정예산          | 증 감         |         |             | 추경안           | 추 경 사 유  |
|-----------|--------------------------------|---------------|-------------|---------|-------------|---------------|--|
|           |                                |               | 계           | 증 액     | 감 액         |               |  |
| 부서명       | 5개 사업                          | 2,267,480,832 | △13,749,758 | -       | △13,749,758 | 2,253,731,074 |  |
| 자산<br>관리과 | 공유재산<br>관리 및 운영                | 1,022,011     | 580,618     | 580,618 | -           | 1,602,629     | ○서울의료원 강남분원<br>재산매각에 따른 감정평가<br>수수료 확보를 위한 추가<br>예산 편성                       |
| 계약<br>심사과 | 공공공사<br>사전계약<br>심사제 운영         | 108,056       | △47,408     | -       | △47,408     | 60,648        | ○SH공사 주택건설사업<br>등 사업계획조정 등으로<br>심사대상 감소(15개→7개)에<br>따른 감액 조정                 |
| 세제과       | 재정보전금                          | 955,632,443   | △13,934,858 | -       | △13,934,858 | 941,697,585   | ○전년도 재산세 정산분<br>집행잔액과 금년도 교부액<br>추가 소요분을 상계한 결과<br>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감액<br>조정      |
| 세무과       | 지방소득세<br>소득분<br>특별징수<br>납세조합보조 | 334,000       | 163,934     | 163,934 |             | 497,934       | ○납세조합에 지급하는<br>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br>징수교부금 증가 따른 추가<br>예산 편성                       |
| 세무과       | 세무종합<br>시스템 운영<br>및 유지보수       | 2,359,142     | △512,044    | -       | △512,044    | 1,847,098     |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br>지방세화 전환 관계법령<br>개정 지연에 따른 세무종합<br>시스템 추가개발비용 집행<br>불가로 인한 감액 |

## 가.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

-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사업은 서울시 소유 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것으로, 연도 중에 매각 결정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의 매각시 소요가 예상되는 감정평가수수료 5억 8천만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임.

### ▶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사업 추가경정요구(안)

(단위: 천원)

| 구 분                                       | 추경예산<br>(안) | 기정예산      | 증 감     | 산 출 내 역   |
|---|-------------|-----------|---------|---|
| 계   | 1,602,629   | 1,022,011 | 580,618 |   |
| 사 무 관 리 비<br>(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 1,602,629   | 1,022,011 | 580,618 | ◦ 서울의료원 감정평가 수수료 580,618<br>*수수료 : 평가액(A,B)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의 합<br>(286,094+294,523) |

-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은 지난해 정부의 복지 확대에 의해 서울시 재정지출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하게 재산 매각이 결정됨에 따라 2013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이후 매각 절차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서울의료원 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감정평가수수료는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액으로 하여 공개입찰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바, 각각의 감정평가기관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임.

#### □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 추진 과정

- '13.10.07 : 2014년도 예산 수립 및 재정여건에 대한 시장보고(기획조정실)
- '13.11.01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매각 적정)
- '13.11.06 : 2014년도 예산안 편성보고(기조실, 시장방침 제290호)
- '13.11.22 :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추진계획(시장방침 제309호)
- '13.12.02 :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행정자치위원회 가결)

## 나. 공공공사 사전계약심사제 운영

- 사전계약심사제도는 공공공사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일정 규모의 대형공사(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발주시 설계 진행 중 ‘설계 내용의 경제성’, ‘자재선정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비효율적인 설계 내역을 수정함으로써 설계 성과품의 내실화를 통한 공사품질을 확보하고 예산절감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금번 추경은 금년도에 추진 예정이었던 사전계약심사 대상 15개 사업이 SH공사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조정에 따라 7개 사업으로 감소하면서 불용이 예상되는 심사관련 예산 4천 7백만원을 감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참고자료).

### ▶ 공공공사 사전계약심사제 운영 사업의 추가경정요구(안)

(단위 : 천원)

| 구분                             | 추경예산<br>(안) | 기정예산    | 증 감     | 산출내역   |
|--------------------------------|-------------|---------|---------|--|
| 계                              | 60,648      | 108,056 | △47,408 |  |
| 공공공사 사전<br>계약심사제 운영<br>(사무관리비) | 60,648      | 108,056 | △47,40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계약심사 외부전문가 수당 48,048</li> <li>○ 안건인쇄 및 발송 6,300</li> <li>○ 회의실 대과료 등 기타운영비 6,300</li> </ul> |

-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사전계약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추진계획과 변경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 및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4년도 사전계약심사 대상사업 목록(2014년 9월 15일 기준)

| 연번 | 기관명          | 공사명                            | 분야 | 사업비<br>(천원) | 신청<br>예정 | 진행사항 및 변경사유                 | 비고              |
|----|--------------|--------------------------------|----|-------------|----------|-----------------------------|-----------------|
| 1  | 도시철<br>도공사   | 에스컬레이터 개량공사                    | 기계 | 7,000,000   | 3월       | 심사완료                        | '14년<br>추진      |
| 2  | SH공사         | 오금 보금자리주택지구<br>1,2단지 정보통신공사    | 통신 | 7,612,362   | 8월       | 심사완료                        |                 |
| 3  | 성동구          | 행당동 138~158번지<br>일대 침수방지       | 토목 | 7,400,000   | 9월       | 심사진행 중                      |                 |
| 4  | 도시기반<br>시설본부 | 양천주민편익시설<br>증축공사               | 건축 | 9,000,000   | 10월      | 당초 7월에서 발주연기                |                 |
| 5  | 도시철<br>도공사   | 에스컬레이터 교체공사                    | 기계 | 6,270,000   | 11월      | 당초 5월에서 발주연기                |                 |
| 6  | SH공사         | 은평3-13 미래도시주거<br>신모델 조성 전기공사   | 전기 | 8,390,000   | 12월      | 당초 9월에서 발주연기                |                 |
| 7  | SH공사         | 은평3-13 미래도시주거<br>신모델 조성 정보통신공사 | 통신 | 5,594,000   | 12월      | 당초 9월에서 발주연기                |                 |
| 8  | SH공사         | 신내3지구 4단지<br>도시형생활주택 건설공사      | 건축 | 6,791,630   | 2015년    | 당초 '14.6월에서<br>도시계획결정 보류    | '15년<br>후<br>추진 |
| 9  | SH공사         | 신내3지구 5단지<br>도시형생활주택 건설공사      | 건축 | 6,477,202   | 2015년    | 당초 '14.6월에서<br>도시계획결정 보류    |                 |
| 10 | SH공사         | 신내3지구 6단지<br>도시형생활주택 건설공사      | 건축 | 7,231,828   | 2015년    | 당초 '14.6월에서<br>도시계획결정 보류    |                 |
| 11 | SH공사         | 강일2지구 준주거1-1,2<br>도시형생활주택 건설공사 | 건축 | 5,757,434   | 2015년    | 당초 '14.5월에서<br>도시계획결정 보류    |                 |
| 12 | SH공사         | 고척동156 장기전세주택<br>건설공사          | 건축 | 7,473,489   | 2015년    | 당초 '14.11월에서<br>도시계획결정 보류   |                 |
| 13 | SH공사         | 향동보금자리주택 2단지<br>정보통신공사         | 통신 | 5,377,504   | 2015년    | 당초 '14.9월에서<br>보상지연으로 발주 연기 |                 |
| 14 | SH공사         | 향동보금자리주택 3단지<br>정보통신공사         | 통신 | 5,377,504   | 2015년    | 당초 '14.9월에서<br>보상지연으로 발주 연기 |                 |
| 15 | SH공사         | 향동보금자리주택 4단지<br>정보통신공사         | 통신 | 5,377,504   | 2015년    | 당초 '14.9월에서<br>보상지연으로 발주 연기 |                 |

## 다. 재정보전금

- 재정보전금은 「지방세기본법」(제9조 및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조례」(제44조 내지 제46조)에 근거하여,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2008년부터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라 재산세 징수액의 50%인 특별시분재산세를 자치구에 전액 균등 교부하는 법정 경비임.
- 금번 추경은 재정보전금 중 공동재산세 전출금 139억원을 감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년 5월에 '2013년 재산세 정산분'에 대한 집행결과 △337억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공동재산세 정기분에 대한 전출금은 재산세 예상징수액의 증가로 198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총 △139억원을 감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 재정보전금 관련 추가경정요구(안)

(단위 : 천원)

| 구분                 | 추경예산<br>(안) | 기정예산        | 증 감          | 산출내역   |
|--------------------|-------------|-------------|--------------|--|
| 계                  | 941,697,585 | 955,632,443 | △ 13,934,858 |  |
| 공 동 재 산 세<br>전 출 금 | 906,537,585 | 920,472,443 | △ 13,934,85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재산세 징수예상액 855,286,000</li> <li>◦ 체납분 징수 예상액 14,468,438</li> <li>◦ 지난년도 결산 정산분 36,738,147</li> </ul> |
| 면허세보전금             | 35,160,000  | 35,160,000  | 0            |  |

## 라.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 동 사업은 「지방세법」(제103조의17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9)에 근거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납입하면, 서울시는 납입세액의 5%에 해당하는 민간위탁금(세입금 징수에 따른 경비)을 납세조합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 민간위탁금은 서울시가 납세조합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경비임.
-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에 대한 납세조합 지급금은 기정예산(3억 3천 4백만원) 편성시 반영되지 아니한 특별징수(납세조합)분 세입이 추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향후 추가 지출이 요망되는 민간위탁금 1억 6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추가경정요구(안) (단위 : 천원)

| 구분                           | 추경예산(안) | 기정예산    | 증 감     | 산출내역  |
|------------------------------|---------|---------|---------|---|
| 계                            | 497,937 | 334,000 | 163,934 |   |
|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보조(민간위탁금) | 497,937 | 334,000 | 163,934 | ◦ 기정예산 + 상반기초과지출액(163,934천원)<br>* 상반기초과지출액 산식 :<br>상반기지출액(330,934천원)-(기정예산×1/2) |

- 납세조합은 소득세법(제1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4조)에 의해 설립·운영되며, 현재 서울시에는 12개 자치구에 총 18개 납세조합이 있음. 금번 추경은 납세조합 중 마포구에 소재한 한국을근납세조합의 조합원 증가와 조합원의 성과급 소득에 따른 납부세액 증가로 인해 해당 납세조합에 지급한 민간위탁금의 추가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것임.

### ▶ 한국을근납세조합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비교 (단위 : 백만원)

| 구분        | 조합원수 |      | 납세조합 징수액 |        | 납세조합 징수교부금 |      |
|-----------|------|------|----------|--------|------------|------|
|           |      | 증감   | (A)      | 증감     | (A)×5%     | 증감   |
| 2014년 상반기 | 552명 | ↑172 | 2,317    | ↑2,076 | 116        | ↑114 |
| 2013년 상반기 | 380명 |      | 241      |        | 12         |      |

## 마.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은 지방세 전 세목의 과징 업무를 적기에 추진하고 세법개정 등 변화하는 세정여건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여 각종 정책자료와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세무종합시스템에 신속히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당초 시스템 추가개발을 목표로 기정예산에 15억 6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을 위한 법령 개정이 연기되면서 세무종합시스템 추가개발 중 종합부동산 관련 시스템 추가개발비 4억 2천 7백만원과 시스템 추가개발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결과 발생한 낙찰차액 8천 5백만원이 불용이 예상되는 바, 금번 추경에 총 5억 1천 2백만원을 감액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추가경정요구(안)

(단위 : 천원)

| 구분                     | 추경예산<br>(안) | 기정예산      | 증 감      | 산출내역  |
|------------------------|-------------|-----------|----------|---|
| 전산개발비<br>(시스템추가<br>개발) | 1,050,433   | 1,562,477 | △512,04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개발비 165,213</li> <li>○ 독립세전환개발비 885,220</li> </ul> |

- 당초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완화와 과세 자주권 확립을 위하여 현행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자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2014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으며, 연내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임.
- 따라서, 금번 추경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관련 시스템 추가개발비는 감액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지방세로의 전환을 대비하여, 신속·정확한 세무전산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바. 집행실적 저조 사업에 대한 검토

- 2014회계연도 재무국 소관의 각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2014년 8월말 현재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있는 바, 해당 사업들에 대한 집행가능 여부와 향후 예산편성상 감액 조정 필요성에 대한 점검 등이 요망된다 하겠음.

〈2014년 8월말 현재 80%이상 미집행사업 현황〉

(단위 : 천원)

| 사 업 명  | 예산현액      | 지출원인<br>행위액 | 8월말현재<br>지출액 | 집행잔액      | 미집행률   | 비고   |
|--|-----------|-------------|--------------|-----------|--------|------|
| 물품구매 관리 효율화<br>(국외업무여비)                          | 20,000    | 0           | 0            | 20,000    | 100.0% |      |
|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br>(사무관리비)                           | 9,880     | 0           | 0            | 9,880     | 100.0% |      |
| 세무공무원 전문교육 강좌<br>개설 운영(사무관리비)                    | 1,400     | 0           | 0            | 1,400     | 100.0% |      |
|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br>(공기관등에대항대행사업비)                   | 43,388    | 0           | 0            | 43,388    | 100.0% |      |
| 모범납세자 지원<br>(기타보상금)                              | 302,760   | 0           | 0            | 302,760   | 100.0% |      |
| 시세 세원발굴 지원<br>(기타보상금)                            | 10,000    | 0           | 0            | 10,000    | 100.0% |      |
|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br>강화(기타보상금)                       | 6,000     | 0           | 0            | 6,000     | 100.0% |      |
| 재정사업자문단 구성운영<br>(사무관리비)                          | 12,000    | 2,000       | 2,000        | 10,000    | 83.3%  |      |
| 세무공무원 직무역량<br>강화를 위한 연찬회<br>(사무관리비)              | 30,000    | 2,000       | 2,000        | 28,000    | 93.3%  |      |
|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br>구축(전산개발비)                         | 579,000   | 79,700      | 79,700       | 499,300   | 86.2%  |      |
| 공공공사 사전계약심사제<br>운영(사무관리비)                        | 108,056   | 13,223      | 13,223       | 94,833    | 87.8%  | 감추경  |
| 계약정보통합관리시스템<br>구축(자산및물품취득비)                      | 564,902   | 485,522     | 0            | 564,902   | 100.0% | 집행예정 |
| 시유재산 정밀 실태조사<br>추진(연구용역비)                        | 50,000    | 45,712      | 0            | 50,000    | 100.0% | 집행예정 |
| 시설공사 준공도면<br>전산통합관리(사무관리비)                       | 40,000    | 36,000      | 0            | 40,000    | 100.0% | 집행예정 |
|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br>유지보수(공공운영비)                      | 796,665   | 764,798     | 0            | 796,665   | 100.0% | 집행예정 |
| 세외수입종합시스템 운영<br>및 유지보수(전산개발비)                    | 68,468    | 66,410      | 0            | 68,468    | 100.0% | 집행예정 |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br>인프라 개선(사무관리비,<br>전산개발비, 자산및물품취득비) | 3,380,000 | 3,378,650   | 0            | 3,380,000 | 100.0% | 집행예정 |
| 과태료 사전통지서 PDA<br>발급 확대<br>(전산개발비, 자산및물품취득비)      | 180,000   | 158,758     | 0            | 180,000   | 100.0% | 집행예정 |